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69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이주희 · 이광희 · 김 현
남인순 · 최민희 · 노종면
김한규 · 황정아 · 이훈기
부승찬 · 정진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랜기간 제기되어 왔음.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고 있음.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의 법정형이 높으나 실무에서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법정형과 양형 실무 간 괴리가 존재함. 아울러 제3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형을 상향함으로써 양형 실무를 반영하여 형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제70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제2호 중 “사실이나 거짓의”를 “거짓의”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u>사실이나 거짓의 사실</u> 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 ----- ----- <u>거짓의</u> ----- -----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①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u>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삭 제>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② ----- ----- ----- ----- -----

자격정지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u>7천만원</u> ----- -----.
<u>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u>	<u>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 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u>